대학원학칙

제정 2007. 3. 1.
개정 2008.11.10.
개정 2009. 6. 8.
개정 2009. 9.14.
개정 2010. 9. 6.
개정 2011. 3.21.
개정 2011.10.18.
개정 2011.12. 1.
개정 2012.10. 1.
개정 2013.10. 1.
개정 2014. 3. 1.
개정 2014.10. 1.
개정 2015. 9. 1.
개정 2016. 9. 1.
개정 2016.10.20.
개정 2017. 9. 1.
개정 2018. 3. 1.
개정 2019. 3. 1.
개정 2019. 9. 1.
개정 2020. 3. 1.
개정 2020. 9. 1.
개정 2021. 3. 1.
개정 2021. 9. 1.
개정 2021.11. 1.
개정 2022. 4. 1.
개정 2022. 9. 1.
개정 2022.11. 1.
개정 2023. 2. 1.
개정 2023. 5. 1.
개정 2023. 7. 1.
개정 2023.11. 1.
개정 2024. 2. 1.
개정 2024. 3. 1.
개정 2024. 5.22.
개정 2024. 9. 1.
개정 2025. 1.15.

개정 2025. 5. 1.
개정 2025. 6. 1.
개정 2025. 9. 1.
개정 2025.10. 1.
개정 2025.11. 1.
개정 2026. 1. 1.
개정 2026. 5.27.
개정 2026. 8.10.
개정 2026. 10.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을지대학교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을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설치한 대학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원의 종류) 본교에는 다음 각 호의 대학원을 둔다.

1. 일반대학원 : 대학원
2. 특수대학원 : 보건복지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 (개정 2021.9.1.)

제3조(학위과정) ① 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이하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이라 한다)을 두며, 각 과정 안에 연구기관, 산업체 및 정부기관과의 협동과정(이하 “학·연·산 협동과정”이라 한다)과 학과간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② 특수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③ 각 대학원에는 학위과정 이외에 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연구과정 등을 둘 수 있다.

④ 각 학위과정에 국내 대학 및 외국 대학(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에 한정한다)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7.9.1.)

⑤ 각 학위과정에 산업체의 요구에 의한 계약에 의한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7.9.1.)

제3조의2(박사학위 과정 신설 기준) 일반대학원에 박사학위 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2 제1항 별표1의2에 따른 교원 중 2분의 1 이상은 박사학위 과정의 설치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계열별 연구 관련 실적 및 기준을 충족한 자로 한다.

1. 인문·사회 계열 : 최근 5년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등에 발표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실적이 3편 이상일 것
2. 자연과학·공학·의학 계열 : 최근 5년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등에 발표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실적이 4편 이상일 것(개정 2026.1.1.)

3. 예·체능 계열 : 최근 5년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등에 발표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실적이 3편 이상일 것

[본조신설 2024.2.1.]

제4조(학과·전공 및 입학정원) ① 각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석·박사학위통합과정 입학정원은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서 산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원에 입학, 편입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2에 따른 산업체 위탁학생,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위탁학생 (개정 2008.11.10., 2025.1.15.)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제4조의2(계약학과 등)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 또는 전공을 둘 수 있으며, 이의 운영에 관하여 특별히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8.11.10.)(개정 2024.9.1.)

제4조의3(외국인 학생 대상의 정원외 전담학과 설치) ①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원외 전담학과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정원외 전담학과의 학과 및 입학정원은 제4조제1항의 정원과는 별도로 한다.

③ 정원외 외국인 전담학과는 석사학위과정(한·중 이중언어과정)으로 운영하는 (Ⅰ)유형과 석사·박사·석박사통합학위과정(영어과정 및 이중언어과정)으로 운영하는 (Ⅱ)유형으로 구분하며, 기타 정원외 전담학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4.9.1.)(개정 2026.5.27.)

제2장 입학 및 등록

제5조(입학전형 횟수 및 시기) ① 각 대학원은 매년 1회 또는 2회에 걸쳐 정시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정시전형이후 결원에 대해 수시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대학원 입학의 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로 한다. (신설 2011.3.21.)

제6조(입학지원 자격) ① 석사학위과정과 석·박사학위통합과정에 입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박사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③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은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1.3.21.)

1. 교수
2. 부교수
3.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4. (삭제 2012.7.22.)

④ 대학원 각 과정별 입학지원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조(전형방법) ① 대학원 각 과정의 입학은 서류심사와 구술면접시험으로 전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석사학위과정,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학사학위과정의 성적이, 박사학위과정은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성적이 우수한 자 및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특별(서류)전형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모집요강에 의한다.

제8조(지원절차) 각 대학원 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내야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입학허가) 각 대학원 학위과정에 합격한 자의 입학은 각 대학원장의 상신에 의하여 총장이 허가한다.

제10조(편입학 및 재입학) ① 편입학 및 재입학은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제외한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②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고 제적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

③ 재입학된 자에게는 이미 이수한 학기, 학점, 자격시험 등을 인정할 수 있다.

④ 편입학 및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에 따로 정한다.

제11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입학금과 그 밖의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1.)

② 재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일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③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조기졸업 제외), 박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8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수료 후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연구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10.20., 2026.8.10.)

④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의 추가등록은 선수과목을 포함하여 3학점까지는 반액등록, 3학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등록으로 한다.

⑤ (신설 2025.5.1.)(삭제 2026.8.10.)

제11조의2(영구수료생 및 연구수료생 등록) ① 영구수료생이라함은 각 학위과정을 수료하였으나 학위청구논문 제출 시한이 경과한 자가 학위 취득을 위하여 등록한 수료생을 말하며, 1회에 한하여 영구수료생 등록을 하고, 등록 후 4학기 이내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20.)(개정 2022.4.1., 2026.5.27.)

② 연구수료생이라함은 석사학위 수료생 중 수료 후 3년이 경과한 자가 학위취득을 위하여 등록한 수료생을 말하며, 연구수료생 등록을 하고 학칙 제29조(학위수여 요건)에 따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신설 2026.5.27.)

③ 대학원 영구수료자 중에서 학위 취득을 원하는 자는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등록을 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5.27.)

④ 영구수료생 및 연구수료생의 등록금은 해당학기 수업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대학회계 예산에 세입한다. (개정 2026.5.27.)

제12조(등록금 반환) 한번 납입한 등록금은 과오납을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는 예외로 한다.

제3장 학적변동

제13조(휴학) ① 대학원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학하게 한다.

1. 「병역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
2.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3.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를 말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 2025.11.1.)
4. 창업하게 된 때 (신설 2023.11.1.)
5.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 (개정 2023.11.1.)
6. 기타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 (개정 2023.11.1.)

② 휴학기간은 1회에 2개 학기까지 가능하며,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은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 임신·출산·육아(2년 이내), 창업(2년 이내), 장애로 인한 휴학은 휴학횟수 및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3.11.1.)

제14조(복학) 복학을 원하는 자는 매 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에 각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군휴학자의 복학은 소정의 등록기간(수업일수 4분의 1)내에 전역을 마치고 병적증명서(또는 전역증)를 첨부하여 복학 신청을 등록기간 내에 한 경우에 허가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4분의 1선 후부터 종강일 전에 전역하는 학생이 당해학기에 복학을 원할 경우 다음의 요건을 검토하여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수업일수 4분의 1선 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제출서류 : 전역예정증명서, 전역예정일까지의 휴가증 사본, 부대장의 수학승인
2. 수업일수 4분의 1선 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제출서류 : 전역예정증명서, 강의가 있는 날의 휴가증 사본, 부대장의 수학승인서,
3. 군 복무를 마치기 전에 복학을 하여도 군 복무와 학교 수학에 무리가 없고, 정상적인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병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복무 중 수학이 제한되지 않을 경우

제15조(자퇴)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 원서를 제출하여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제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4주가 넘도록 복학하지 않은 자
2.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을 마치지 않은 자
3. 재학연한 내에 수료하지 못한 자
4. 징계 등의 사유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의결된 자

제16조의2(전과, 전공변경) ① 각 대학원에 입학한 자는 1회에 한하여 소속대학원 내에서 학과 또는 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한 자는 전과 및 전공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 (신설 2010.9.6.)

②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0.9.6.)

제16조의3(학위과정변경) ① 석사학위과정과 석·박사학위통합과정에 입학한 자는 1회에 한하여 석사학위과정은 석·박사학위통합과정으로,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석사학위과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0.9.6.)

②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0.9.6.)

제4장 수업연한, 교육과정, 학점, 성적 및 수료

제17조(수업연한) ①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2년,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4년으로 한다. 단, 계약학과는 협약서 내용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0.9.6., 2025.1.15., 2025.5.1.)

② 정원외 외국인 전담학과(Ⅰ)의 석사학위과정 외국인 학생의 경우 수업연한을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25.5.1.)(개정 2026.8.10.)

제18조(재학연한) 일반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석사학위과정은 4년, 박사학위과정은 6년,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8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수대학원의 재학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9조(교육과정) ① 각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대학원장이 정한다.

② 각 대학원 학과는 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과정의 개편,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대학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각 대학원장은 협의를 통하여 교과목을 공동 개설할 수 있다.

④ 교육과정에 개설된 과목당 부과학점은 3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양해각서 체결에 의한 교육과정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학기를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대학원 유연학기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9.1.)

제20조(과정 이수학점) ① 대학원의 과정별 수료를 원하는 자는 별표 2와 같이 석사학위과정 24학점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36학점 이상,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6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임상간호대학원 전문간호사과정은 33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9.6.)

② 전공과 관련되는 다른 전공의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전공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학점은 석사학위과정 9학점, 박사학위과정 15학점, 학·석사연계과정 9학점, 석·박사통합과정 24학점 이내로 한다. (신설 2014.10.1.)

③ 석사학위 졸업요건 중 비논문학위과정의 경우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7.9.1.)

제21조(학기당 이수학점 및 수업일수 등 학사운영) ① 대학원은 학기당 12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다만, 타전공 입학자는 제22조 규정에 의한 선수과목을 합하여 1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선수과목의 취득학점은 제20조 규정의 과정 이수학점에 가산하지 않는다. 또한, 임상간호대학원 전문간호사과정생이 학위논문연구를 이수하는 학기에는 1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0.9.6., 2021.9.1., 2021.11.1., 2023.11.1.)

② 이중언어과정 외국인의 경우 학기당 최대 18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신설 2025.5.1.)

③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를 충족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3주(단,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수업은 7주) 한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단,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같은 학기 내에서 주말 등을 활용한 집중수업(이하 "집중이수제"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집중이수제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1.9.1.)(개정 2022.9.1., 2025.5.1.)

④ 학습형태는 각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과목별 출석학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출석학습 이외에 원격수업, 과제학습 등에 의하여 당해 교과목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9.1.)(개정 2025.5.1.)

⑤ 학습형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1.9.1.)(개정 2025.5.1.)

⑥ 과목 담당 교수는 매시간 출결 상황을 점검해야 하며, 3회 이상 결석한 자의 명단을 즉시 학과장에게 보고하고 학과장은 그 명단을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아래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한 자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신설 2021.11.1.)(개정 2025.5.1.)

1.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한정검사(의무복무기간 제외) 및 질병 (신설 2021.11.1.)
2.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신설 2021.11.1.)
3.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입양 (신설 2021.11.1.)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11.1.)

제21조의2(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교과목 담당 교수는 「예비군법」 제6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훈련기간 동안 출결, 성적처리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으며,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보강 등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9.1.]

제22조(선수과목) 일반대학원 타전공 입학자는 선수과목을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 선수과목의 지정은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주임교수)이 정하여 학과(교실)의 교수회의를

거친 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0.18.)

제23조(학위과정 연계) ① 학사과정의 학생은 학과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일반대학원 과목을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적부상 그 사실이 등재되나 대학 졸업학점으로는 포함되지 않고 일반대학원 진학 후 과정이수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하며, 학·석사 및 학·석박사통합연계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9.1., 2020.3.1., 2020.9.1.)

제24조(성적등급 및 재수강) ① 각 대학원의 학업성적 평가는 다음과 같이 등급, 점수, 평점 등으로 구분하고 성적등급 C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며, 각 과정의 수료에 있어서는 총 이수학점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선수과목은 평점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개정 2024.2.1.)

등 급	점 수	평 점
A+	95 ~ 100	4.5
A	90 ~ 94	4.0
B+	85 ~ 89	3.5
B	80 ~ 84	3.0
C+	75 ~ 79	2.5
C	70 ~ 74	2.0
F	69 이하	0
P	선수과목	X
I	성적유예	

② 성적등급이 C인 과목은 동일학수번호의 강좌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③ 성적평가가 성적처리기간 내에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I(성적유예)” 등급을 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5조(수료의 시기) 본 대학원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 말로 한다.

제5장 학위수여

제26조(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과목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7조(수료와 졸업) ① 각 대학원 학위과정의 수료와 졸업 시기는 매 학기 말로 한다.

② 수료라 함은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이 정하는 정해진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③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4학기 이상 등록하고 학칙이 정하는 석사학위과정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한 경우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신설 2010.9.6.)

제28조(학위의 구분 및 종별) ①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는 다음과 같다.

1. 일반대학원 : 학술석사학위, 학술박사학위
2. 특수대학원 : 전문석사학위
3. 명예박사학위 : 학술학위에 준함

② 각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별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9.6.)

제29조(학위수여 요건) ① 일반대학원의 석·박사학위는 각 과정에서 정해진 학점을 취득하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석사학위 과정의 외국인학생, 계약학과 학생, 수료 후 3년이 경과한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위논문을 대체하는 교과목을 추가 이수하여 정해진 학점을 취득하고 해당 대학원 내규로 정한 사항을 이수한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4.1., 2025.1.15., 2025.6.1.)

② 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는 각 과정에서 정해진 학점을 취득하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에 합격한 자이거나 학위논문을 대체하는 교과목을 추가 이수하여 정해진 학점을 취득하고 해당 대학원 내규로 정한 사항을 이수한 자에게 수여하며, 수료 후 3년이 경과한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위논문을 대체하는 교과목을 추가 이수하여 정해진 학점을 취득하고 해당 대학원 내규로 정한 사항을 이수한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임상간호대학원 전문간호사과정은 정해진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6.1.)

③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을 중도에 자퇴하는 자로서 학칙이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30조(학위청구논문 제출) ① 석·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장(주임교수)과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위청구논문 제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박사학위의 경우 학위청구논문 제출 신청서 외에 이력서 및 연구경력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1.)

② 석·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심사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1.3.21.)

제31조(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2.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3.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그 밖에 각 대학원내규로 정한 사항

제32조(논문심사) ① 학위청구 논문심사는 본교 전임교원 또는 해당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위원으로 구성된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② 석사학위 청구 논문 심사위원회는 3명 이상, 박사학위 청구 논문 심사위원회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3조(박사학위 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표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8.11.10.)

제34조(학위수여) 각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은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 3의 과정별 및 전공별 명칭의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21.9.1.)

제35조(학위수여시기) 학위수여는 연 2회로 하며, 매년 2월과 8월에 한다.

제36조(학위수여의 취소) 석·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그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9.1.)

제37조(명예박사) ① 우리나라의 학술과 국민건강의 증진에 공헌하였거나 인류의 복지와 건강증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명예박사학위 수여는 대학원장이 추천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명예박사학위 수여 의결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 총장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개정 2021.9.1.)

④ 명예박사학위는 대학원 정규 학위수여일 외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6장 공개강좌, 연구생

제38조(공개강좌) ① 직무, 교양 또는 연구상 심오한 학식이나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각 대학원에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를 이수한 자에게는 이를 증명하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③ 공개강좌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9조(수료 후 연구생) ①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특수과목 또는 과제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 및 학위과정 수료 후 석·박사 논문준비를 위하여 연구자로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수료 후 연구생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10.20.)

② 수료 후 연구생으로 연구 실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는 연구실적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③ 수료 후 연구생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0.20.)

제7장 학생의 감독 및 장학금

제40조(학생의 지도감독) 본 대학원의 재학생은 본교 및 본 대학원의 학칙을 준수하고 대학원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41조(장학금) 각 과정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자에게는 장학금 또는 연구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상벌)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선행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또는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 대하여는 포상 할 수 있다. (개정 2021.3.1.)

②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대학원장의

보고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신설 2021.3.1.)

③ 상벌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학생상벌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21.3.1.)

제8장 직제 및 대학원위원회

제43조(직제) ① 일반대학원에는 원장, 부원장, 교학과장을 둔다. (개정 2020.9.1.)

② 특수대학원에는 원장, 교학과장을 둔다.

제44조(학과장과 지도교수) ① 각 대학원의 각 학과(전공)마다 학과장(주임교수)을 두고 개별 학생의 연구 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

② 지도교수는 본교의 교수, 부교수와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로 한다. (개정 2016.9.1.)

제45조(대학원위원회) ① 대학원에는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대학원위원회는 각 대학원장을 포함하여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일반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 각 대학원에는 운영위원회를 두어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③ 대학원위원회의 산하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6조(위원의 임기) 대학원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7조(대학원위원회 및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의의 심의사항) ①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대학원 학칙 및 규정의 제정 및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3. 대학원 학생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각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진학과 과정수료 인정에 관한 사항
2. 학과와 전공의 설치와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 관련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1.3.1.)
6. 그 밖의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48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발의 또는 위원 과반수의 발의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9조(학칙의 개정) 대학원장은 학칙개정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인가를 받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0조(준용조항) 이 학칙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51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8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9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9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20조, 제21조의 개정학칙은 2011학년도 입학자(편입자 포함)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대학원 방사선학과, 보건대학원 보건의료경영학과, 임상간호대학원 응급간호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폐지되는 보건대학원 방사선학과와 보건의료경영학과, 임상간호대학원 응급간호전공은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졸업할 때까지 학과(전공)가 존치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 당시 보건대학원 방사선학과, 보건의료경영학과, 임상간호대학원 응급간호전공에 재적하는 자에게는 개정 전 학칙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고, 교육과정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학부정원 감축에 따른 대학원 학생정원 증원) 2011학년도부터 학부 의료경영학과 편제 160명에 대한 학생정원을 감축하고 편제 106명의 대학원 학생정원을 연차별로 증원하며 그 인원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	학부편제(감축정원)	대학원편제(증가정원)
2011	120 (▽ 40)	26 (△ 26)
2012	80 (▽ 40)	53 (△ 27)
2013	40 (▽ 40)	80 (△ 53)
2014	0 (▽ 40)	106 (△ 53)

부 칙

이 학칙은 201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1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원 중독상담학과, 보건대학원 치위생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폐지되는 대학원 중독상담학과, 보건대학원 치위생학과는 재적생이 졸업할 때까지 학과가 존치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 당시 대학원 중독상담학과, 보건대학원 치위생학과에 재적하는 자에게는 개정 전 학칙에 따라 학위를 수여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경광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대학원 안경광학과, 보건복지대학원 안경광학과에 재적 중인 자에게는 개정 전 학칙에 따라 학위를 수여한다.

부 칙 (신설 2024.2.1.)

이 학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별표1의 임상간호대학원 입학정원 증원은 2025학년도 입학자(편입자 포함)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4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6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3의 정원외 외국인 전담학과의 학과명은 2025학년도 입학한 학생부터 개정된 학칙에 따른다.

부 칙

이 학칙은 2026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

(개정 2008.11.10., 2009.6.8., 2009.9.14., 2010.9.6., 2011.10.18., 2011.12.1., 2012.10.1., 2013.10.1., 2014.3.1., 2014.10.1., 2015.9.1., 2016.9.1., 2016.10.20., 2019.3.1., 2019.9.1., 2020.9.1., 2021.9.1., 2021.11.1., 2022.11.1., 2023.2.1., 2023.5.1., 2023.7.1., 2023.11.1., 2024.3.1., 2024.5.22., 2024.9.1., 2025.1.15., 2025.5.1., 2025.6.1., 2025.9.1., 2025.10.1., 2026.5.27., 2026.10.1.)

<의정부캠퍼스>

구분	대학원명	계열	학과명	전공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일반 대학원	대학원	의학	의학과	해부학 및 신경과학, 생리학 및 생물리학,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 병리학 및 분자의학, 미생물학 및 면역학 , 약리학, 예방의학, 법의학, 의학교육학 의과학	○	○	○
				내과학, 외과학, 산부인과학, 소아청소년과학, 정신건강의학, 신경과학, 피부과학, 정형외과학, 흉부외과학, 신경외과학, 성형외과학, 비뇨의학, 이비인후과학, 안과학, 영상의학, 마취통증의학, 재활의학, 진단검사의학, 가정의학, 응급의학	○	○	○
		자연과학	간호학과	간호학	○	○	-
			임상병리학과	임상병리학	○	○	○
			방사선학과	방사선학	○	○	○
			옵토메트리학과	옵토메트리학	○	○	-
			보건환경안전학과	보건환경안전학, 안전보건학	○	○	○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학	○	○	-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 임상영양학	○	○	○
			미용화장품과학과	미용화장품과학	○	○	-
			의료인공지능학과	의료인공지능학	○	○	○
			치위생학과	치위생학	○	○	○
			응급의료학과	응급의료학	-	○	-
			코스메디컬푸드학과	식품영양학, 식품생명공학, 화장품과학	○	○	○
		인문사회	의료경영학과	의료경영학, 경영학	○	○	-
			중독재활상담학과	마약수사심리학, 중독재활상담학, 복지행정학	○	○	○
		예체능	스포츠융합학과	스포츠융합학	○	○	-
		학과간 협동과정	장례의과학과	장례의과학	○	-	-

구분	대학원명	계열	학과명	전공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시니어헬스케어학과	시니어헬스케어학, 바이오제약	○	○	○
			생체의과학융합학과	생체의과학융합학	○	○	○
		입학정원			66명	36명	
특수 대학원	보건복지 대학원	자연과학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학	○	-	
			임상옵토메트리학과	임상옵토메트리학			
			응급의료학과	응급의료학			
			미용화장품과학과	미용화장품과학			
			임상운동재활학과	임상운동재활학			
		인문사회	유아교육보육상담학과	유아교육보육상담학			
			중독재활복지학과	중독재활복지학, 사회복지학			
			중독상담학과	중독상담학			
		입학정원			20명	-	
	임상간호 대학원	자연과학	노인간호전공		○	-	
			정신간호전공				
			임상간호교육전공				
		입학정원			25명	-	
총 입학정원					111명	36명	

1) (신설 2024.9.1.)(삭제 2026.5.27.)

<계약학과> (신설 2025.1.15.)

구분	대학원명	계열	학과명	전공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
일반 대학원	대학원	공학	보건환경안전학과	안전보건학	○	○	○
			안전보건시스템학과	안전보건시스템학	○	-	-

<정원외 외국인 전담학과(Ⅰ)> (신설 2025.5.1.)(개정 2025.6.1., 2026.5.27.)

구분	대학원명	계열	학과명	전공	학위 과정	비고
일반 대학원	대학원	자연과학	시니어헬스케어학과(Ⅰ)	바이오제약	석사	한·중 이중언어
			방사선학과(Ⅰ)	방사선학		
			물리치료학과(Ⅰ)	물리치료학		
		공학	글로벌빅데이터AI학과(Ⅰ)	인공지능		

<정원외 외국인 전담학과(Ⅱ)> (신설 2026.5.27.)

구분	대학원명	계열	학과명	전공	학위 과정	비고
일반 대학원	대학원	공학	글로벌빅데이터AI학과(Ⅱ)	인공지능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영어
		인문사회	글로벌스포츠경영학과(Ⅱ)	글로벌스포츠경영학	석사	이중언어

[별표 2] 과정이수학점(수료최저기준학점) (개정 2010.9.6., 2021.9.1.)

대학원명	수료최저학점	비고
일반대학원	석사 24학점 박사 36학점 석박사통합 60학점	선수과목 제외
보건복지대학원	석사 24학점	선수과목 제외
임상간호대학원	전문간호사과정 : 석사 33학점 임상간호교육과정 : 석사 24학점	전문간호사과정 - 노인간호전공, 정신간호전공

[별표 3] 대학원 학위과정별, 학과·전공별 수여학위명

(개정 2010.9.6., 2011.12.1., 2012.10.1., 2013.10.1.. 2014.3.1., 2014.10.1., 2016.10.20., 2019.3.1., 2019.9.1., 2020.3.1., 2020.9.1., 2021.9.1., 2021.11.1., 2022.11.1., 2023.2.1., 2023.5.1., 2023.7.1., 2023.11.1., 2024.3.1., 2024.9.1., 2025.1.15., 2025.5.1., 2025.6.1., 2025.9.1., 2025.10.1., 2026.5.27., 2026.10.1.)

구분	대학원명	계열	학과(전공)명	석사학위명	박사학위명	학위종류
일반 대학원	대학원	의학	의학과	의학석사 이학석사	의학박사 이학박사	학술학위
		자연과학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간호학박사	
			임상병리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방사선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옵토메트리학과	보건학석사	보건학박사	
			보건환경안전학과	이학석사 공학석사	이학박사 공학박사	
			물리치료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식품영양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미용화장품과학과	이학석사	미용화장품 과학박사	
			의료인공지능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치위생학과	치위생학석사	치위생학박사	
			응급의료학과	-	보건학박사	
			코스메디컬푸드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인문사회	의료경영학과	보건학석사 경영학석사	보건학박사 경영학박사	
			중독재활상담학과	중독재활상담학석사 복지행정학석사	중독재활상담학박사 복지행정학박사	
		예체능	스포츠융합학과	체육학석사	체육학박사	
		학과간 협동과정	장례의과학과	보건학석사	-	
			시니어헬스케어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생체의과학융합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특수 대학원	보건복지 대학원	자연과학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학석사		전문학위
			임상옵토메트리학과	임상옵토메트리학석사		
			응급의료학과	보건학석사		
			미용화장품과학과	미용화장품과학석사		
			임상운동재활학과	임상운동재활학석사		
		인문사회	유아교육보육상담학과	문학석사(유아교육보육상담학)		
			중독재활복지학과	중독재활복지학석사 사회복지학석사		
			중독상담학과	문학석사(중독상담학)		
	임상간호 대학원	자연과학	노인간호전공	간호학석사(노인간호)		전문학위
			정신간호전공	간호학석사(정신간호)		
			임상간호교육전공	간호학석사(임상간호교육)		

<계약학과> (신설 2025.1.15.)

구분	대학원명	계열	학과(전공)명	석사학위명	박사학위명	학위종류
일반 대학원	대학원	공학	보건환경안전학과 안전보건학전공	공학석사	공학박사	학술학위
			안전보건시스템학과 안전보건시스템학전공	공학석사	-	

<정원외 외국인 전담학과(Ⅰ)> (신설 2025.5.1.)(개정 2025.6.1., 2026.5.27.)

구분	대학원명	계열	학과(전공)명	석사학위명	학위종류
일반 대학원	대학원	자연과학	시니어헬스케어학과(Ⅰ) 바이오제약전공	이학석사	학술학위
			방사선학과(Ⅰ) 방사선학전공	이학석사	
			물리치료학과(Ⅰ) 물리치료학전공	이학석사	
		공학	글로벌빅데이터AI학과(Ⅰ) 인공지능전공	공학석사	

<정원외 외국인 전담학과(Ⅱ)> (신설 2026.5.27.)

구분	대학원명	계열	학과(전공)명	석사학위명	학위종류
일반 대학원	대학원	공학	글로벌빅데이터AI학과(Ⅱ) 인공지능전공	공학석사 공학박사	학술학위
		인문사회	글로벌스포츠경영학과(Ⅱ) 글로벌스포츠경영학전공	글로벌경영학석사	

［별지 제1호 서식］ **석사 학위기**

학 위 기

제 호

성 명 :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전공)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문제목 :

20 년 월 일

○○대 학 원 장 **(학 위)** ○ ○ ○

위의 인정에 의하여 ○○석사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을지대학교 총장 **(학 위)** ○ ○ ○

학위번호 : 을지대 (석)

［별지 제2호 서식］ **석사 학위기(논문없는 경우)**

학 위 기

제 호

성 명 :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전공)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하여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20 년 월 일

○○대 학 원 장 **(학 위)** ○ ○ ○

위의 인정에 의하여 ○○석사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을지대학교 총장 **(학 위)** ○ ○ ○

학위번호 : 을지대 (석)

［별지 제3호 서식］ **박사 학위기**

학 위 기

제 호

성 명 :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전공)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문제목 :

20 년 월 일

○○대 학 원 장 **(학 위) ○ ○ ○**

위의 인정에 의하여 ○○박사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을지대학교 총장 **(학 위) ○ ○ ○**

학위번호 : 을지대 (박)

［별지 제4호 서식］ **박사 학위기(석박사학위통합과정)**

학 위 기

제 호

성 명 :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교 대학원 석박사학위통합과정(전공)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문제목 :

20 년 월 일

○○대 학 원 장 (학 위) ○ ○ ○

위의 인정에 의하여 ○○박사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을지대학교 총장 (학 위) ○ ○ ○

학위번호 : 을지대 (박)

［별지 제5호 서식］ **명예박사 학위기**

학 위 기

명박 제 OOOO 호 O O O

국적 19 년 월 일

생

이 분은 우리나라의 학술과 국민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여 왔고 특히 (인류의 복지와 건강증진 등에) 지대한 공헌을 하여 명예○○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20 년 월 일

○○대 학 원 장 **(학 위) ○ ○ ○**

위의 인정에 의하여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을지대학교 총장 **(학 위) ○ ○ ○**

학위번호 : 을지대 (명박)